영등포구의회
제17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화영 의원 대표발의】

2013. 2. 28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基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85호로 2013년 2월 18일 김화영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기업지원 및 육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기업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대상사업 규정(안 제6조 ~ 제15조)

○ 기업환경 개선, 창업지원, 마케팅지원,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 기술개발 지원, 특화산업 지원, 기업관련 단체의 지원

○ 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예산지원,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

마.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 ~제20조)

○ 기업지원 및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지급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우리 구에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 첨단 벤처기업 등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에 체계적인 재정과 행정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장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총칙규정으로 용어정의와 적용범위, 기업지원 및 육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2장은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국내·외 우량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로·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지원에 관한 규정과 창업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및 예산 지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범위와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업민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제3장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기업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할 경우 간혹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에 의해 기업지원 활동이 제한 받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조례의 근거 없이 무상으로 관내 기업인에게 기술개발 지원 및 사업비 등의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　　),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2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1.7.25]